

광주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5374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피고B

변론 종결2023. 4. 7.

판결 선고2023. 6. 1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1> 기재 돈(합계 1억 6,225만 원)에 관한 각 금전증여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22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2> 기재 돈(합계 8,005만 원)에 관한 각 금전증여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자산관리, 회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자녀이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1. 5. 1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6억 원을 변제기 2002. 4. 29., 지연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이에 대해 D의 대표이사이던 C 등이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하고, 위 대출금 채권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은 E으로부터 F 유한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H는 2018. 9. 27.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등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H는 자신이 양수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중 일부인 '430,147,031원 및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1207호)을 신청하여 2016. 3. 3.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30.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9. 3. 7. 위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9. 7. 11. C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C는 2018. 7. 25.부터 2020. 2. 17.까지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의 I 계좌(이하 '이 사건 I 계좌'라 한다)로 10회에 걸쳐 합계 5,30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9. 2. 28.부터 2022. 4. 2.까지 피고 명의의 E 계좌(이하 '이 사건 E 계좌'라 한다)로 57회에 걸쳐 합계 1억 92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송금행위 전체(합계 67회)를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하고,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C가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한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고, 전체 송금액은 1억 6,225만 원(= 5,305만 원 + 1억 920만 원)이다. 반면, 2018. 7. 25.부터 2022. 12. 16.까지 사이에 C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10(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E,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중 일부)을 양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다.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8. 7. 25.부터 2022. 4. 2.까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합계 1억 6,225만 원을 증여하였다.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한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증여받은 위 1억 6,22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위 1억 6,225만 원 전부에 대해 증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I 계좌는 피고가 급여를 수령하거나 자신의 거주지인 원주에서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각종 보험료 또는 공과금 등을 지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피고의 전용 계좌이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중 위 I 계좌로 송금된 합계 5,305만 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돈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C가 2020. 2. 17. 이 사건 E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2,700만 원도 2020. 3. 5.부터 같은 달 7.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I 계좌로 송금1) 됨에 따라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 중 별지 <표2>와 같이 2018. 7. 25.부터 2020. 2. 17.까지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된 위 8,005만 원(= 5,305만 원 + 2,700만 원)은 C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한 돈은 다시 C에게 송금되거나 C 부부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되는 등 C의 지시에 따라 지출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을 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5, 6, 을11 내지 3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C가 대표이사로 있던 D은 경영악화로 2008년경부터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52)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2012. 3. 12.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2)를 받아 폐업하였다(을27 참조). 그 과정에서 C 역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를 포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담보로 제공한 C 소유의 부동산도 경매 등을 통해 D의 채무변제에 충당되기도 하였다(을26, 28 참조). 그에 따라 C(배우자인 J 포함)는 신용불량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C가 자신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송금거래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우체국 계좌는 2020. 1. 1.부터 2022. 11. 27.까지 대체로 계좌의 잔고가 100만 원 내외로 유지되면서 비교적 소액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결제하거나 C의 자녀인 피고와 이 사건 송금거래를 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② 한편, 이 사건 I 계좌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거나 자신의 생활비나 공과금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I 계좌로 송금된 돈이 모두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거나 송금인(C)과 계좌명의인(피고)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위 I 계좌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371만 원이 다시 C의 계좌로 송금되거나(을1 참조) 피고의 다른 계좌인 이 사건 E 계좌로 2022년경까지 합계 31,985,150원이 송금되었고(을2 및 I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참조), C의 채권자로 보이는 사람들(K, L, M, N)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며(을3, 4, 20, 21, 25, 33 참조), C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항공권 구입비용이나 차량 또는 가전제품 구입비용 등의 용도로 지출된 금액도 적지 않아 보인다(을6, 22 참조). 이처럼 위 I 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체로 계좌명의인인

피고의 부친이자 송금인인 C 또는 그 부부의 생활이나 채무변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송금액을 C의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무상 공여로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송금행위를 전후하여 이 사건 E 계좌에서도 다시 C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돈이 약 1,79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을7, 11 참조), 위 E 계좌에서 결제되는 카드대금 등으로 결제된 금액도 적지 않다(E체크카드 : 약 2,743만여 원, ○카드 : 2,134만여 원). 특히 피고 명의로 된 위 카드들의 사용처가 대체로 피고의 거주지(원주) 부근이 아니라 C 부부가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는 인천 인근에 있는 업체들로 보이고, 그 사용용도도 주로 생활비나 병원비 등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므로(을12 내지 19, 30, 32 참조), C는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로 위 카드들을 발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그 카드대금 등의 결제를 위해 피고 명의의 위 E 계좌로 돈을 송금해온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④ 비록 원고의 직원인 P이 2020. 12. 1.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C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지속적으로 이체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피고가 '제가 뭐 설명드릴 건 없고,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생활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대답한 부분이 있으나(갑5의 3쪽 참조), 그 후 다시 P이 '그 액수가 좀 상당히 커가지고'라고 말하자 피고는 '액수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저도 잘은 안 봐가지고 보고 얘기를 해도 해야 될 거 같거든요.'라고 말한 부분도 있으므로(갑5의 3쪽 참조), 피고가 위 전화통화 당시 이 사건 송금액 전체를 두고 위와 같이 말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짧은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 C가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증여(무상 공여)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추정할 수도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가 피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을 증여 또는 무상 공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C와 피고 사이의 금전증여약정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송금액 1억 6,22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의 증여약정 또는 무상공여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I 계좌가 피고만을 위한 전용계좌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인 8,005만 원(= 위 I 계좌로 송금된 5,305만 원 + 이 사건 E 계좌로 2020. 2. 17. 송금되었다가 그 후 위 I 계좌로 다시 송금된 2,700만 원)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정영호

별지

1) 실제로는 1,000만 원씩 3회 송금되어 합계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